

세무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 예상질문에 대한 답변서

2022.06.30 기준

문 1) 「세무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배상청구기준)이란 무엇입니까?

➤ 피보험자인 세무사가 세무관련 업무를 대행하다 조세신고 신청청구 지연, 세금계산 착오, 세무관련 서류 작성의 오류 등의 업무상 과실로 의뢰인 또는 제 3 자에게 직접적 손해를 입 힌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금 및 사고처리에 드는 제반 비용을 보상해 주는 상품입니다.

문 2) 사고처리에 드는 제반비용에는 어떤 것이 해당됩니까?

여기에는 변호사 비용, 전문조사인 비용, 소송비용, 중재나 화해에 드는 비용, 공탁보증보험료, 대위권 보전비용, 기타 보험사의 동의 하에 지출한 비용이 있습니다.

문 3)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 ▶ <u>보상한도액이란 사고 발생시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의 상한선</u>을 뜻하며 보상한도 액이 높을수록 보험료는 비싸집니다.
- ➤ <u>자기부담금이란 공제금액</u>이라고도 하며 자기부담금 이하의 손해에 대해서는 피보험자 본 인이 책임을 부담하며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확정된 손해액에서 자기부 담금과 공동보험비율 차감 후(공동보험 미적용 선택시에는 미차감)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 서 보상됩니다.
- ➤ <u>자기부담금의 적용</u>: <u>동일회사의</u>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신고시 발생한 <u>동일한 업무상 과</u> 실에 기인한 사고들은 그 과실이 연속된 귀속연도에 계속 반복되어 발생하였더라도 기간 에 관계없이 하나의 사고로 간주하여 자기부담금을 적용합니다.

문 4) 『공동보험제도』란 무엇입니까?

➤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1 회의 배상청구(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손해 사정 후 결정된 손해배상금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예상지급보험금)의 규모에 따라 하기의 비율만큼 피보험자가 부담하고 보험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예상보험금 규모	공동 부담비율	
1천만원 미만	13%	
1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23%	
3천만원이상~	28%	

- ※ <u>소액사고 공동보험 미적용</u> : 하나의 사고에 대해 예상지급보험금(산출 손해배상금 -자기부 담금)이 50 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소액사고의 경우 공동보험 미적용
- ※ 단, 공동보험제도를 미적용하여 가입을 원하시는 경우 <u>기준 보험료에 50% 할증</u>된 보험 료가 적용됩니다.(단, 직전 3개년의 사고가 3건 이상인 경우 의무적용)



문 5) 「배상청구기준」 증권과 「소급담보일」 이란 무엇입니까?

▶ 배상청구기준증권이란 현재 유효한 보험증권의 보험기간 중에 제 3 자 (의뢰인 포함)로부터 손해배상청구가 있어야 보상이 가능한 증권입니다.

즉, 가입증명서에 기재된 소급담보일(Retroactive Date) 이후의 업무로 인하여 보험종료일 사이에 발생된 배상청구에 대하여 보상이 이루어지며 소급담보일 이란 통상 최초 보험가입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매년 갱신이 이루어질 경우 소급담보일 이후의 업무가 계속 담보되지만 이 때의 보상기준은 업무일이 속한 보험증권 가입조건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배상청구 당시의 유효한 보험가입 조건에 따라 보상이 됩니다.

※ 보상 예)

2021.6.30 계약 조건 : 보상한도액 3 천만원 / 자기부담금 5 백만원

공동보험 미적용 선택

2022.6.30 갱신 조건 : 보상한도액 5천만원 / 자기부담금 2백만원

공동보험 미적용 선택안함

상기 가정하에 2021년 10월에 신고한 내용이 잘못되어 2022년 9월 1일에 3 천만원이 배상청구 되어 손해액 확정된 경우 : 청구시점 기준인 2022년도 조건에 따라 손해액 2 천만원에서 자기부담금 2 백만원을 차감한 예상보험금이 1,800 만원으로 1 천만원이상~3 천만원미만에 해당하여 <u>피보험자의 부담비율 23%인 414 만원을</u> 제외한 1,386 만원이 지급됨.

문 6) 무사고 할인 / 인원수 할인 적용

무사고 가입 기간에 따라 계속 할인을 적용합니다.

구분	15년 이상	10년 이상	7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2년 이상	1년 이상	신규 가입
할인율	20% 할인	15% 할인	14% 할인	13% 할인	10% 할인	7% 할인	5% 할인	0%

법인의 경우 소속 세무사 인원수에 따른 할인 추가 적용

소속 세무사 인원수	3~6명	7~10명	11명 이상
할 인 율	5%	10%	15%

문 7) 사고자 보험료 할증

▶ 갱신 직전 3 개년도 증권의 보험기간 동안 수령한 누적보험금(추산보험금 포함)에 따른 개인 별 손해율을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개별 할증 적용합니다. 단, 추산보험금이 반영되어 갱신 할증된 경우 사고종결 후 최종 확정된 지급보험금에 따른 손해율 및 할증률이 갱신시점 할증 율과 다른 범위로 결정된 때에는 보험료를 추징 또는 환급합니다.



손해율	0%~ 100% 이하	100%초과~ 200%이하	200%초과~ 500%이하	500%초과~ 1000%이하	1000%초과~ 2000%이하	2000%초과~
할증율	0%	50% 할증	100% 할증	200% 할증	250% 할증	280% 할증

➤ 단체계약의 가입 제한 : 갱신 직전 3 개년 증권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가 3 건 이상이며, 손해율 500%이상인 세무사께서는 본 단체계약에 가입 할 수 없습니다. (법인 소속 세무사 중 한 명이 위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 전체가 가입할 수 없습니다.)

문 8) 10 년 이상 계속적으로 가입한 가입자의 사고발생시 "장기가입우대 프로그램"도입

- ➤ 문 7)의 사고자 보험료 할증적용은 가입경력과 무관하게 최근 3 개년 기준 손해율 규모에 따라 할증율을 적용하였으나, 10 년 이상 가입자의 사고 발생시 아래와 같이 "장기가입우대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습니다.
- ◈ 최근 3개년 손해율이 100% 이하 대상자 중 가입경력이 10년 이상
 - → 무사고 기간에 따른 개인/법인 할인율 유지

예시) 2002 년 7월 이후 무사고 계속 가입자가 당해년도 증권 사고발생 (무사고 기간 15년 이상 / 20% 할인대상)

3개년 누적손해율	할증적용율	장기가입우대 적용
95%	0%	20% 할인 (기존할인 유지)

최근 3 개년 손해율이 100% 초과하지만 가입경력이 10 년 이상,
10 년 누적 손해율이 50%이하인 대상자 → 할증율 50% 경감

예시) 2005 년 7월 이후 계속 가입자(15년 이상)가 당해년도 증권 사고발생

3 개년 누적손해율	10 개년 누적손해율	할증적용율	장기가입우대 적용
508%	40%	200%	100%할증 (할증적용율의 50%경감)

문 9) 보험가입 전 업무의 담보여부 및 「고지의무」

▶ 이 보험은 보험가입 전의 업무로 발생한 사고나 가입 당시 이미 발생한 사고, 손해배상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거나,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원인에 기인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계약 체결 당시 반드시 보험회사에 고지하여야 하며,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상되지 않거나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문 10) 보험가입 후 알릴 사항 및 「통지의무」

➤ 보험가입 후 피해자 또는 제 3 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우 또는 배상청구는 없었지 만 사고의 발생이 예상되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보험회사에 서면 통보를 해야 합니다. 피보험자는 상황통지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의 통보가 늦는 경우 또는 보험기간 내에 통보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거나, 보상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문 11)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 보험금 지급 후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으므로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문 12)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 가. 피보험자의 악의적 또는 사기적 부정행위
 - 나. 전문업무의 수행과 관련 없는 신체상해 또는 재물손해
 - 다. 중상, 비방 또는 명예훼손 등 인격침해
 - 라. 유가증권, 부동산 또는 기타 투자관련 자문 업무 등
 - 마. 피보험자의 지불불능 및 파산에 기인한 손해배상책임
 - 바. 보험개시일 이전에 행한 업무에 기인한 손해배상책임 단, 갱신인 경우 최초 보험계약일이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 보상함.
 - 사. 계약상 가중책임, 단, 법률상 배상책임은 담보함
 - 아. 결과적 책임
 - 자. 기타 약관에서 정하는 사항

문 13) 계약상 가중책임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 배상책임보험에 있어서 법률상의 배상책임보험이라 함은 법률에 규정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만을 말하며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합의에 의하여 <u>법률의 규정상 타인의 배상책임을 자신이 부담하는 경우, 이를 법률규정상의 배상책임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계약상의가중책임이라고 합니다.</u>

문 14) 사고 처리시 '손익상계' 는 무엇입니까?

▶ 의뢰인(피해자)이 정상신고 시 납부했어야 할 세액이 나중에 납부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이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이를 손해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손익상계는 통상 법정이율 연 5%를 적용하여 공제합니다. (민법 제 379 조에 따름)



문 15) 사고처리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보험사고 예상 및 인지 시 보험사에 즉시 서면 통보
- ▶ 피해자 또는 제 3 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우 또는 배상청구는 없었지만 사고의 발생이 예상되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록톤코리아로 연락을 주시기 바라며, 즉시 보험사에 서면에 의한 사고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피보험자는 상황통지의무가 있으므로 상기 사실의 통보가 늦는 경우 보상되지 않거나, 보상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접수된 경우 록톤코리아는 보험회사에 즉시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회사에서는 사고접수 후 손해사정인을 선임하거나 자체적으로 사고조사를 하게 됩니다. 사고조사는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약 3~4 주가 소요됩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사고보고서가 작성이 되고 보험회사는 이를 기초로 하여 보험금을 정산하여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록톤코리아는 협상권을 가진 보험중개인으로서 계약자를 대변하여 보험계약 내용의 해석 및 사실관계의 판단에 개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보험계약 자는 보험계약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문 16) 록톤코리아(LOCKTON KOREA)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 ▼ 록톤코리아는 보험회사와는 별도의 독립 단체인 보험중개인으로 고객의 위험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수의 보험사가 취급하는 상품을 비교하여 고객에게 최적의 상품을 권유 또는 주선하는 등 보험계약체결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계약자의 대변인 역할을 수행하며 사고 발생시에는 사고 통보로부터 보험금 수령에 이르기까지의 제반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록톤코리아는 세무사뿐만 아니라 변호사, 변리사, 관세사, 회계사, 법무사 등 전문자격사들의 손해배상책임보험을 단체보험으로 도입 및 운영하고 있어 이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 * 상기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상품안내이며 세무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가입과 보상은 청약서상의 보험조건 및 보험약관에 따릅니다.
- * 이 보험의 보상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번역본은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약관은 보상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반드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문의 및 상담	록톤컴퍼니즈코리아손해보험중개㈜ 전문인보험팀	이순옥 상무 윤 원 이사 윤자영 차장 박순정 과장 이윤아 주임	TEL: 02)2011-0300 FAX: 0503-8379-2008
--------------	----------------------------	--	--